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년 6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2008년 7월 11일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

나. 제안이유

- 전방조종자동차(7~10인승)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함(안 제17조제1호)

라. 참고사항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786('08.5.8)호 및 경상북도 세정과-6259('08.5.9)호]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수 영

○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 행정안전부의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기준을 적용 부과하고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된 조례안으로 타 법에 저촉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